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16차 위원회 전체회의(임시)

□ 일 시 : 2021. 10. 14(목) 12:15~12:35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바로 임시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임시위원회 회의를 10월 간담회에 이어 제31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 주시고요. 연락이 유선으로 안 되면 경과와 사항을 문자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불참하신 박경주 위원님께서는 문자로 안전에 대한 설명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답신은 없습니다.

## 2. 개 회 선 언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중도에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의 결 사 항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은 제8대 위원장 선출시기(안)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정정숙 위원님을 비롯한 10인의 위원이 발의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논의를 하기 전에 이번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개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결안건에 대해서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안전번호 제910호 제8대 위원장 선출시기(안)입니다. 동 건은 이시백 위원님, 정정숙 위원님, 이진희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장인주 위원님, 전고필 위원님, 정종열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 정유란 위원님, 유은선 위원님 등 총 10인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한 의결주문은 제7대 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제8대 위원장 선출시기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위원 및 위원장은 법 개정 이전에 선출되어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법 개정취지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8대 위원장의 선출시기를 차기 위원회 구성시기와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8기 위원회 구성 시 제 8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차기 위원회 구성 시, 즉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예진흥법 제 5조 3항 및 정관 제7조 5항에 따라 현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정숙 위원** :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7기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7기 위원들께서 위원장에 호선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데요. 8기 위원들의 대표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7기 위원님들의 희생에 대해서, 또는 기회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의의를 인정하면서 이 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정정숙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그러한 권리와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대표성의 문제를 고심하시어 자발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이 안전에 대해서 질의와 논의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지만, 법률적 해석을 다시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 25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정관 제 7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근거해서 남은 현재 위원장님의 임기를 2022년 5월 7기 위원들의 임기와 함께 종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또는 논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안전에 대한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찮으신가요?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요.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한 과정에 저희 위원님 중에 1인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실 수 있어서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받는다거나 설명을 드려서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일단 통과를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그 1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사무처와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상태로 박경주 위원님께서 유선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으셔서요. 일단 저희의 진행사항은 계속해서 연락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형식상 이것을 유보적으로 조건부로 의결하기는 어렵다는 감사님의 의견입니다.

**정정숙 위원** : 그렇습니까?

**이원재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의결은 중요성이 있는데 조건부 의결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조건부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원재 위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려에는 저도 동의하고 전원이 일치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경주 위원님과 상관없이 위원회가 1~2인이 없을 때 의결을 못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우리가 긴급회의에는 동의를 했지만 긴급회의 자체가 오늘 당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의결로 할까?”하는 의견을 아까 내지는 못 했는데요. 오늘 당일에 불참자가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것을 저희가 의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인이 소외된 것은 그분 자신의 불찰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긴급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가 정당하려면 그 1인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급하게 하루 이틀 만에 처리를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건부 의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제가 아까 박경주 위원께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답장이 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중요한 논의지만 안전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결정에는 그렇게 기여하는 건 알지만 예술위의 이러한 방식이 과정에 대해 소홀한 것이 본인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도 보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의결해야 할 안전에 대해서 사전안내가 없었다는 것이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현재 연락이 된 것인가요?

**유은선 위원** : 예, 현재 저에게 문자가 왔고 위원장님께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유선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경과를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위원** : 본인이 의견을 내셨어요. 서면의결로 자기가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개인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절차상 아직 의결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사봉을 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견은 모아진 것이고요. 정정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1인이 불참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안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셨지만 그것이 오늘 의결된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불참하신 분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서 서면의결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한 안입니다. 또 당사자인 위원님께서 문자로 남기신 바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서면의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위원** :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거수로 표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어차피 서면의결을 여기에서 하고 제출하게 되면, 박경주 위원의 서면의결서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서면의결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결국 서면의결로 바뀌기는 하는 것인데요. 서면의결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박경주 위원 본인이 의견을 단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사무처에서 준비하신 의결의 과정은 우리가 서식으로 서명을 통해서 의결의 근거를 남길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기된 정정숙 위원님과 유은선 위원님 그리고 불참하신 박경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과 같이 서면의결의 형식으로 하루 정도 의결을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그러한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사무처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주 위원** : 오늘 날짜로 서면의결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 정도 정회를 하고요. 정회 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시간관계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회의의 진행상 사무처와 상의를 한 끝에 한 가지 안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충분히 되었으나 의결 단계에서 전체위원회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해서 서면의결의 형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원재 위원** :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서면의결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이사안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관계나 과정을 고려해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회의 원칙에 대해서 정정숙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규정을 잘 보시면,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위원들이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해되어 이후에 위원 개인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숙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의견을 모으는 것에 동의를 해서 저도 서면의결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안 했다거나 다른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서면의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진희 위원** : 저도 앞선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명확하게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들을 배제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서면의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서면의결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정숙 위원님의 의견이나 유은선 위원님의 의견에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전체 위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으는 형태로 힘을 잘 정돈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서면의결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절차의 문제나 논의과정을 회귀시키는 방식의 지금 토론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의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발언의 취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은선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듣기만 하고 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기는 했는데요. 이시백 위원장님께서도 본인의 의견은 있지만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했고 저도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에 저도 의견이 드는 것도 있고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인 대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박경주 위원도..... 제가 박경주 위원의 대변인은 아니고 그 의견 하나가 이것을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주면, 그것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행상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특히 정정숙 위원님이 7기 위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어느 것 하나를 내가 참고 넘어간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한 의견이 아니실까 해서 설명을 덧붙이면, 아니지만 참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서면의결을 하는 목표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한 논의와 원칙과 위상을 지켜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지금 우리의 안건이 많아서 계속 시간을 끌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이원재 위원님, 이진희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긴급 사안에 대한 의결과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들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지금 처음으로 저도 겪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위원회의 한분 한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안 자체의 중요성도 물론 큼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12인 한분 한분의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을 배제하고 간다거나 의사소통이 분명히 안 된 상태에서 중요한 발언과 중요한 사안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취약하게 취급되는 것은 저는 원치를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요. 지금 이 모든 혼란은 저의 진행상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을 자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흔쾌하게 규정을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 조금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때문에 가능하면 불참하신 위원님까지 모두 포함해서 서면의 형식을 취해 주시기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오늘 임시위원회의 사안은 서면의 형식을 취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과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서면 의결의 형식으로 오늘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유보하시면 됩니다.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예, 그러면 본 안건을 유보하고 제31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의 형식으로 재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추가로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께는 오늘의 진행경과를 요약해서 전달하고 금일자로 서면의결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정리가 되셨으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임시

회의를 열었는데 서면회의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요원 감사 :** 서면회의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가 전원 합의적 성격을 갖는.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서면의결서를 주시면 저희가 사인을 하면 끝나요.

**남요원 감사 :** 여기 내용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된 것이고.

**이원재 위원 :** 절차가 달라요. 서면 절차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구두로 한 것은 서면의결이 아니잖아요? 서면의결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한 것이죠.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회의에서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의견의 취지를 살려서 서면 의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을 못 한 것이죠.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317차 서면의결로 되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예, 서면의결의 절차로 다시 보내 주시고요.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다시 공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서면의결의 절차를 다시 밟으시고 서면 의결은 내일자로 정리하고요. 아직 임기가 끝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오셔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남요원 감사 :**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은 의결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의결된 것은 없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서면의결을 하기로 했다.”까지가 오늘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원재 위원 :** 토론하고 공감하고 공동발의까지 된 것이죠.

**남요원 감사 :** 그러니까 공동발의라고 하는 것은 참석하셨던 위원 10인의 전원 합의된 내용으로 공동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원재 위원 :**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정회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서면의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서면의결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사항은, 오늘 이 검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와 취지에 대한 토론을 했고 저희가 10인의 공동발의로 안건상정을 하고 서면의결을 한다. 이 안건의 중요성이나 취지를 고려해서요. 그래서 내일자로 서면의결 절차를 밟아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4. 폐 회 선 언

이시백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서면의결의 형식으로 별도로 의결한다.” 로 유보하고 결정된 것으로 하고 폐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회의종료)

